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3.

발의자 : 엄태영 · 서천호 · 김재섭
박덕흠 · 안철수 · 유상범
강명구 · 조지연 · 정점식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· 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어업권 · 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어업권 · 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